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09
----------	-------

발의연월일 : 2026. 4. 24.

발 의 자 : 김기웅 · 박성훈 · 정동만
임종득 · 백종현 · 이종배
이인선 · 김기현 · 서명옥
정희용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시설에서 오염공기·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등 환경위생과 식품·먹는 물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로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학생들의 건강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학생이나 유해물질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에 취약한 학생 등이 이용하는 학교시설이나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보다 엄격한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학교시설 환경위생에 관한 별도 기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환경위생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1. 오염공기·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에 취약한 학생이 이용하는 학교시설
 2.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 기준의 구체적인 항목, 대상, 지역 등 적용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4조의4(학교시설 환경위생에 관한 별도 기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환경위생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야 한다.</u></p> <p><u>1. 오염공기·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에 취약한 학생이 이용하는 학교시설</u></p> <p><u>2.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시설</u></p> <p><u>②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 기준의 구체적인 항목, 대상, 지역 등 적용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u></p>

으로 정한다.